

08

원산지 관리, 현장의 목소리

원산지인증수출자 오류 사항과 개선 방안





원산지인증수출자 오류 사항과 개선 방안



황남재
한국원산지정보원 서울이행지원센터
센터장

I. FTA 특혜 조건과 원산지 증명

FTA는 무역 장벽을 완화하여 자유 무역을 실현하려는 협정으로 2024년 1월 기준 우리나라는 21건의 FTA를 59개국과 체결하였다.

인증수출자제도는 2006년 한-EFTA로 소개되었고, 중요한 자율 원산지 증명 제도로 자리한 것은 2011년 한-EU FTA 발효 시점이라 생각된다.

한-EU, 한-영국, 한-EFTA, RCEP 등 인증수출자제도가 운영되는 협정에서는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수출 물품 원산지 증명이 어려워 FTA 특혜 관세를 활용할 수 없다.

FTA 특혜를 활용하려면 다음 5개 요건 충족이 선행되어야 한다.

① 품목 요건은 계약국 간에 관세 등을 양허하기로 한 품목 ② 원산지 상품 요건은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 ③ 당사자 요건은 계약국의 당사자(수출자, 수입자, 생산자) 간 거래되는 것 ④ 원산지 증명 요건은 유효한 원산지 증명 서류에 근거해 협정 관세를 신청하고 관련 자료를 일정 기간 검증에 대비해 보관하는 것이다. 또한 ⑤ 직접 운송 요건은 계약 당사국 간 FTA 품목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2국가 간 직접 이동하여야 한다.

원산지 증명은 FTA 특혜 관세 신청의 필수 요소로 발급 주체에 따라 기관 발급과 자율 발급으로 구분되며, 인증수출자제도는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할 경우 수출자 등이 발급하는 자율 발급 방식에 해당한다.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이후 관계 기관의 교육과 확대 노력으로 많은 기업이 인증수출자를 취득했지만, 소규모 업체나 신생 업체는 인증수출자제도를 어려워하며 FTA 활용율도 낮은 경향이 있다.

본고는 인증수출자 인증 심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오류 사항을 분석하고 신청 시에 주의할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FTA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I. 원산지인증 수출자제도 활용

1)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란?

관세 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 또는 첨부 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수출자제도는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인증수출자 두 종류로 나뉜다.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생산하는 전 품목에 대한 인증 능력을 인정받고,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관계 당국에 의하여 인증받은 품목만 FTA 원산지 자율 발급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표 1]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구분

인증수출자 종류	업체별 인증수출자	품목별 인증수출자
혜택 범위	신청 업체 생산 품목	인증받은 협정과 품목 (HS 6단위)
인증 유효 기간	5년	5년 (법규 준수도별 차등 적용)
인증 기관 (7개)	6개 본부 세관(서울, 부산, 인천, 인천공항, 대구, 광주), 평택 직할 세관	
인증 기준	체약 상대국별 원산지 증명 능력 및 법규 준수도	HS 6단위별 원산지 증명 능력 및 관리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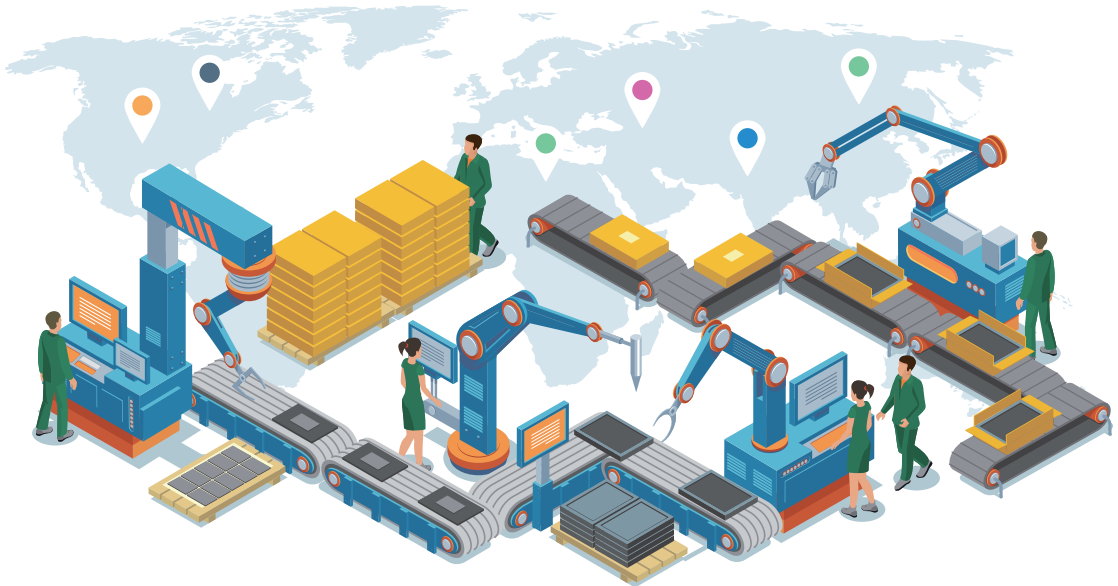
2) 원산지인증수출자 효과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위를 관세 당국으로부터 부여받으면 얻는 효과는 한-EU, 한-EFTA FTA 등 인증수출자제도를 운영하는 협정에서 원산지 증명 발급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하면 기관 발급 대상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할 때 제출 서류 간소화 혜택을 받게 되므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표 2] 원산지인증수출자 효과 비교

종류	비(非)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한-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00유로 이하 수출 물품에 대해 원산지 신고서 작성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00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만 원산지 신고서 작성 가능
한-EF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 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Invoice 신고 시) 수출자 서명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 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통상 Invoice 신고 시) 수출자의 서명 생략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한-중국 한-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 (전산으로 신청) 첨부 서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신고필증사본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확인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 그 밖의 원산지 증빙 서류 현지 확인(필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 (전산으로 신청) 첨부 서류 제출 생략 현지 확인 생략 가능
기타 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미적용	





Ⅲ. 인증 절차와 확인 서류

1) 인증 절차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심사는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지 본부 세관 또는 직할 세관에 신청서를 접수한다. 접수하는 방법은 방문이나 우편 송부 또는 전산망 유니패스 등의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제12조(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에 따른 인증 신청 요건은 업체별과 품목별로 차이가 있다.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신청 업체의 전 품목에 대하여 인증수출자제도를 인정하는 FTA 모두에 대한 원산지 증명 능력을 부여받게 되므로 위법 사실 조회나 자격 조건을 엄격하게 심사한다.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다음 각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이거나 생산자이다. 1) 수출 실적이 있는 물품 또는 새롭게 수출하려는 물품이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HS 6단위 기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전산 처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증명할 능력이 있을 것. 2)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18조 제1항에 따른 서면 조사는 현지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을 것. 3) 원산지증명서 작성 대장을 비치·관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 관리 전담자를 지정·운영할 것. 4)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제1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 보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5)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하거나 작성·발급한 사실이 없을 것.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1) 수출 실적이 있는 물품 또는 새롭게 수출하려는 물품이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품목 번호 6단위 기준)이어야 하고, 2) 원산지증명서 작성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 관리 전담자를 지정·운영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말한다.



[표 3]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심사 과정

업무 절차		수행 업무
관할 세관	신청 서류 접수	(업체별·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접수
원산지 정보원 이행지원 센터 (예비 조사)	신청 서류 인수	서류 인수 및 제출 서류 완비 검토 * 서류별로 예비 조사 시스템의 인수인계 대장을 확인 하여 제출 서류 확인
	신청 업체 개황 조사	수출 업체 소재지, 생산자, 업체 규모 등
	품목 분류 적정성 검토	신청 물품 품목 분류(HS 6단위) 적정성 검토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 검토	신청 협정의 원산지 결정 기준 확인 및 충족 여부 검토
	보완 요구 목록 작성	품목 분류 적정성,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을 위한 보완 사항 및 형식적 오류 기재
	결과 보고서 세관 인계	예비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완료 및 세관 인계
관할 세관	최종 인증 심사 및 인증서 교부	예비 조사 결과 보고서를 인수하여 최종 인증 심사 후 인증서 교부

2) 인증 심사 주요 내용 및 서류

원산지 인증 수출자로 지정받기 위해 신청 업체가 주소지 관할 본부 세관에(수출 입기업지원센터) 신청하면 서울, 부산, 인천, 인천공항, 대구, 광주 본부 세관과 평택 직할 세관의 세관장은 인증 심사를 실시한다.

주요 심사 내용은 수출 물품 원재료의 HS 품목 분류 적정성과 원산지 관리 적정성, 생산 물품이나 중간재, 완성품이나 수출 물품에 적용되는 협정별 원산지 결정 기준 타당성, 부가가치 비율 산정 적정성, 원산지 판정 정확성, 원산지 증빙 자료 관리 준법성 등이다.



인증수출자 심사에서 확인하는 서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품목 분류와 HS 코드 번호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신청서 HS 6단위 품목이 FTA에서 정하는 양허 대상 품목인지 확인과 결정된 HS 품목이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WCO(세계관세기구)는 국제무역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HS 품목 코드를 품목별로 6단위 숫자로 정하였으며, 국제 협약으로 운영하고 있다.

둘째는 주요 수출 품목의 생산 공정을 확인한다.

신청 업체가 실존하는지, 생산 활동을 하는 회사인지 확인하고 해당품목의 생산 시설을 올바르게 갖추었는지 점검하며, 그 과정이 원산지 판정 기준에 비추어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셋째는 수출자의 원산지소명서 작성 능력을 검토한다.

주요 수출(생산) 품목이 HS 코드 6단위로 올바르게 분류되었는지, 원산지 소명서 각 항목은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원산지 확인서가 작성 기준을 준수하며 작성되었는지, 원산지 소명서와 일치하는지와 원재료의 협정별 품목별 원산지 기준 적용이 정확한지를 검토한다.

넷째는 원산지 결정 기준이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한다.

인증 예비 심사는 수출품을 FTA별로 올바르게 적용하였는지, 품목별로 원산지 결정 기준이 정확하게 적용된 것인지 확인하고 원산지 최종 판정 결과가 협정에서 정한 기준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표 4]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원산지 증명능력 및 확인 서류

주요 내용	세부 내용	확인 서류
① 수출 제품 및 원재료의 품목 분류 번호 및 원산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재료의 품목 분류 번호 관리 	시스템 설명서, 업무 매뉴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재료의 원산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 확인서·국내 제조 확인서 등 원산지 확인 서류 확보 주요 원재료 공급 업체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원재료 공급 업체 선정 기준 및 리스트 원재료 공급 업체 대상 원산지 교육 현황 및 계획 (외부 위탁 교육 가능) 	
② 생산(수출)물품에 적용되는 협정별 원산지기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품목의 상대국 품목 분류 번호 관리 해당 품목의 협정별 원산지 기준 관리 품목 분류, 원산지 기준 추가·변경 시 반영 기능 	
③ 원산지 판정의 정확성(주요 수출·생산품을 선별하여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수출 품목의 생산 공정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가 실존하고, 해당 품목의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불인정 공정 해당 여부 생산자로부터 최종 수출 물품을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 확인서를 제출받았는지 여부 및 원산지 확인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제품 생산 공정 설명서, 원산지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소명서 작성 능력 확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세스 적정 여부 확인 주요 수출(생산) 품목(5개 이내)에 대해 서류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소명서 각 항목이 모두 기재되었는지 여부 원산지확인서·국내제조확인서 등 원산지 확인 서류가 정확하게 작성되고, 원산지 소명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원재료의 협정별·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정확한지 여부 수출품의 협정별·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정확한지 여부 (부가가치 기준 적용 품목의 경우) 각 협정에서 정하는 재료비 가감 요소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원산지 최종 판정 결과가 정확한지 여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세스 적정 여부(시스템 설명서, 업무 매뉴얼) 서류 작성 적정 여부(품목별 소명서 및 소명 자료)
④ 원산지 증빙자료 관리 (검증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출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의 보관(전자 서류, 스캔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약 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 수출신고필증, 거래 관련 계약서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 서류 원가 계산서·원재료 내역서 및 공정 명세서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 관리 대장 등 	시스템 설명서, 업무 매뉴얼



[표 5]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원산지 증명능력 및 확인 서류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에 기재된 품목 번호 6단위 물품의 대표 품목(품목 번호 6단위별)을 선정하여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 공정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가 실존하고, 해당 품목의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불인정 생산 공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생산자로부터 최종 수출 물품을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 확인서를 제출받았는지 여부 및 원산지 확인서 작성이 정확한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소명서 작성 능력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수출(생산) 품목(품목 번호 6단위별)선정 - 원산지소명서 각 항목이 모두 기재되었는지 여부 - 원산지확인서가 정확하게 작성되고, 원산지소명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 원재료의 협정별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정확한지 여부 - 수출품의 협정별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정확한지 여부 - (부가가치 기준 적용 품목의 경우) 각 협정에서 정하는 재료비 가감 요소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 원산지 최종 판정 결과가 정확한지 여부
확인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제품생산공정 설명서 등

IV. 인증 심사 빈번 오류 분석

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 받은 뒤 검토하는 과정에서 빈번한 오류 사항이 발견되었다. 2023년 1년간 신청된 9,050건을 집중 분석해 빈번히 발생하는 오류 사항을 정리하고 방지 대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발생 오류는 HS 품목 분류 착오가 가장 많았고 원산지 결정 기준 잘못 적용 사례, BOM 작성 오류, 제조공정도 작성 오류, 가격 증빙 서류 미제출 등의 순이었다(신청 1건에 지적 항목은 여러 건 발생).

인증 심사에서 빈도수가 높은 오류 사항은 HS 품목 분류 착오로 완제품 신청 세번 분류 착오가 553개, 원재료 품목 분류 착오가 5,748개이다.

신청 서류의 원산지 결정 기준 적용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HS 품목 분류 착오가 241개 발견되어 인증 심사 신청할 때 완제품과 원재료에 대한 HS 품목 분류 착오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재료 HS 품목의 분류 착오가 완제품 분류 착오보다 10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데, 원재료의 품목 분류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부족과 HS품목 분류 업무가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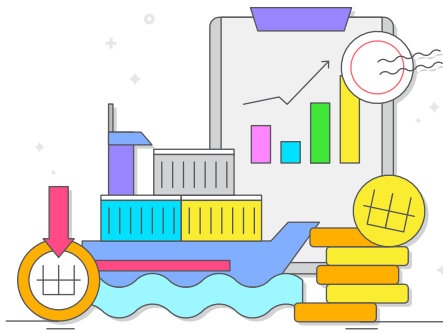
소 미흡하게 다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인증 서류 전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BOM(원재료명세서) 품목 분류 오류 7,079개(25%), 원산지소명서 작성 오류 6,135개(22%), 제조공정도 작성 오류 3,548개(12%),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 오류 2,815개 (10%), 인증 신청서 작성 오류 2,228개(8%), 가격 등 증빙 서류 미제출 2,003개(7%)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6] 발생 항목 건수와 오류 내용

구분	오류(개)	비율(%)	오류 내용
1. 원재료명세서(BOM)	7,079	25%	원산지소명서와 불일치, 원재료 내역 기재 오류(HS, 가격 등), 작성 일자 미기재 등
2. 원산지소명서	6,135	22%	완제품 HS 기재 오류, 규격 미기재 등
3. 제조공정도	3,548	12%	작업처 미기재, 작성 일자 미기재 등
4. 원산지(포괄)확인서	2,815	10%	구서식, 포괄 확인 기간 오류, 작성자 서명 누락 등
5. 인증 신청서	2,228	8%	원산지 결정 기준 기재 오류 등
6. 가격 등 증빙 서류*	2,003	7%	단가·가격 산정 오류, 증빙 자료 미제출 등
7. 서면 확인서	1,342	5%	신청인 기재 오류 등
8. 기타	2,283	11%	미제출, 지정 사유 미기재 등
보완 사항 소계	27,433	100%	-

* 가격 등 증빙 서류 :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 등 가격 기타 증빙 서류





V. 시사점

BOM(원재료명세서), 원산지소명서, 제조공정도, 원산지포괄확인서, 인증 신청서 작성에서 발생하는 미비점이나 오류 사항을 개선하려면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첫째, HS 품목 분류의 정확성 확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 품목 분류가 정확하지 않거나 수출국 요청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관세사 등의 전문가 활용, 종전 처리 사례 참조, 관세청 품목 분류 사전 심사 활용 등을 통해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HS 품목 분류가 잘못되면 거래처가 추징당하거나 책임 소재 다툼 등으로 거래 관계에 부정적이며 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품목 분류에 따라 원산지 결정 기준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둘째, 원산지 결정 기준 적용에 유념해야 한다.

신청 물품 원산지 결정 기준이 협정상 4단위(CTH) 세번 변경을 실수로 2단위(CC) 세번 변경으로 혼동하거나 6단위(CTSH) 세번 변경으로 혼동한 경우가 있고, 부가치를 계산할 때 가산 요소와 공제 요소를 잘못 적용한 사례가 종종 나타난다. 교육 강화로 관리 능력을 높이거나 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해 업무 품질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원산지소명서 작성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원산지소명서는 수출 물품의 요약본으로 작성 후 반드시 전체 서류와 비교 및 대조 작업을 실시해 오류가 없도록 하고, 수출국이 2개 국가이상이면 FTA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협정별로 따로 작성해야 한다.

넷째, BOM은 원산지소명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재하고, 원재료는 원산지에 따라 역내산 원재료와 역외산 원재료로 구분해 역내산 원재료에 대하여는 증빙 서류와 거래처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섯째, 제조공정도 작성 때 HS 코드에 유의해야 한다. 제조공정도는 단계별로 투입되는 원재료와 어떤 원재료가 투입되는지, 어떠한 공정이 수행되는지 가공 공정을 설명해 준다. SP(Specific Process)인 특수 가공 공정과 불인정 공정 해당 여부 판단에 매우 중요하다.

여섯째, 가격 증빙 서류 등을 정확하게 작성/관리해야 한다.

원재료에 대한 거래처별 구매내역서 등은 부가가치를 산출할 때 필수적인 서류로서 가격 구성을 판단하는 중요 요소이다. 구매내역서나 가격 자료 등이 일부만 제출되거나 전체 자료가 부족하여 부가가치 비율을 정확하게 산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한-EFTA(2006년) 발효 이후 18년이 지나며 인증수출자제도는 상당히 안정화되었다. 본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고 수출입 업체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주의 사항을 말씀드린다.

수출입 업체 CEO는 월 단위 또는 분기별로 업무 점검이나 격려를 통하여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산지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여부와 인센티브 제공, 승진이나 가산점 부여 등 처우 개선을 통해 FTA 활용을 유도하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계 당국은 수출입 업체 지도 방문 계획을 운영하고, 법규 준수도 평가 항목으로 인증수출자 항목을 추가하고, 우수 사례 경연 대회 개최 등을 검토해 홍보를 통한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으로 인증 신청 시 발생된 오류 사항을 분석해 방지 대책과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수출입 업체와 관세사 등 전문가 그룹은 본고에서 제시된 사항을 참고하여 앞으로 인증수출자 신청 시 오류를 줄이고 향후 FTA 검증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